



제422회국회(임시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교육비 지원 대상에 조손가족 포함〉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641호)

2025.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 참고자료	
- 2025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여성가족부고시)	10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성훈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11. 18.

다. 회 부 일 : 2024. 11.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소득 수준과 거주지역 등에 따라 지원의 내용과 범위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 따라 그 지원 대상 및 기준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학비(입학금·수업료), 학교급식비, 방과 후학교 자유수강권 및 교육 정보화(PC 및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하고 있음.

한편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별도의 조항에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와 유사하게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조손가족 등을 특별로 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을 교육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저소득 조손가족의 학생이 경제적 부담으로 학업에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4제1항제2호).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교육비 지원 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의 특례 규정에 따라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조손가족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4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①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2.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¹⁾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

1)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수급권자인 학생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3.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지원의 내용과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와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1항), 소득 수준과 거주지역 등에 따라 지원의 내용과 범위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2항), 대통령령²⁾에 따라 그 지원 대상 및 기준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학비(입학금·수업료), 학교급식비, 방과 후학교 자유수강권 및 교육 정보화(PC 및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2024년 시·도 교육청별 교육비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음.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① 법 제6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을 말한다.

1. 입학금 및 수업료
2. 학교급식비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5.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학습을 위한 교육 정보화 지원비
- 5의2. 진로체험 등 진로관련 교육경비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비용

② 법 제60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

1. 해당 가구의 소득금액(소득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매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2. 보호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곤란하게 된 학생으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교육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 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
 - 나. 질병, 사고(事故) 또는 장애로 인하여 근로 능력을 상실한 경우
 - 다. 파산 또는 실직 등으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 ⑤ (생 략)

⑥ 제2항제2호 각 목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 2024년 시·도교육청별 교육비 지원 기준 >

(단위 : 기준 중위소득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고교 학비	중위소득	60%	60%	60%	60%	-	-	60%	-
	기타	난민인정자	난민인정자	학교장 등	난민인정자	-	-	학교장 등	-
급식비	중위소득	60%	-	-	60%	-	-	135%	-
	기타	학교장 등	-	-	학교장 등	-	-	난민인정자 등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중위소득	80%	90%	80%	90%	80%	80%	80%	80%
	기타	난민인정자	학교장 등	학교장 등	학교장 등	학교장 등	학교장 등	학교장 등	학교장 등
정보화 지원	PC	-	의료 한부모 법정차상위	교육	-	주거	의료 한부모 법정차상위 난민인정자	교육	교육
	인터넷	교육 한부모 법정차상위 난민인정자 60%	교육 한부모 법정차상위 학교장	교육 한부모 법정차상위 학교장	교육 한부모 법정차상위 난민인정자 60%	교육 한부모 법정차상위 학교장	교육 한부모 법정차상위 난민인정자	교육 한부모 법정차상위	교육 한부모 법정차상위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고교 학비	중위소득	-	80%	-	-	68%	-	68%	-	-
	기타	-	학교장	-	-	다자녀 학교장 등	-	다자녀 학교장 등	-	-
급식비	중위소득	-	-	-	-	-	-	80%	-	-
	기타	-	-	-	-	-	-	학교장	-	-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중위소득	80%	80%	80%	100%	80%	80%	80%	80%	80%
	기타	학교장 등	학교장 등	다자녀 학교장 등	다자녀 학교장 등	다자녀 학교장 등	다자녀 학교장 등	다자녀 학교장 등	학교장 등	다자녀 학교장 등
정보화 지원	PC	의료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의료 한부모	교육	생계 의료	교육 한부모	의료 한부모 법정차상위 난민	생계	-	교육
	인터넷	교육 한부모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교육 한부모 법정차상위 난민인정자	교육 한부모 법정차상위	교육 한부모 법정차상위 난민인정자	교육 한부모 법정차상위	교육 한부모 법정차상위 난민인정자 학교장	교육 한부모 법정차상위 60%	교육 한부모 법정차상위	교육 한부모 법정차상위

※ 고교학비(입학금·수업료)와 급식비 지원은 각각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비대상 학교에 대한 지원 기준임

※ 범례

- 교육급여, 의료급여, 법정차상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난민인정자: 「난민법」 제3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특별기여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4조의2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학교장추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에 따라 학교장이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자료: 교육부

한편, 현행 교육비 지원 대상 중 하나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지원대상자)³⁾인 학생”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제5조⁴⁾에서 배우자와 사별·이혼하거나 장애, 장기복역·병역복무 중 중인 배우자를 가진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⁵⁾하는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가족의 자녀를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의²⁶⁾에서는 이에 대한 특례로써 부모의 사망·이혼·장기복역

3) 2014년 1월 21일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2330호)되어 종전 보호대상자→지원대상자로 변경되었으나,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는 이를 반영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보호대상자”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하에서는 “지원대상자”로 표시함.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족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5) 2025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여성가족부고시 제2024-56호) : <참고자료>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1호의 출산지원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 장애·실직 등의 사유로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의 아동도 소득 기준(여성가족부 고시)을 충족하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의 교육비 지원 대상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만 명시되어 있을 뿐,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교육비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을 교육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저소득 조손가족의 학생이 경제적 부담으로 학업에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그 하위법령⁷⁾에서는 지원 대상 아동이 “법 제5조에 따라 ‘부자가족’ 또는 ‘모자가족’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지,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조손가족”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아동교육 지원비(학용품비)’ 등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동일한 지원대상자로 취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7)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서식을 보면, 가족구성 형태 등에 대한 구분이나 표시 없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한다”는 사실만을 명시하여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음. 또한, 여성가족부 고시(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따른 아동교육비(학용품비) 지원기준을 보면, 가족구성 형태와 관계없이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고생 자녀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연 9.3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비 지원에 있어서 이들을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현재 시·도 교육청의 교육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실질적인 교육비 지원항목⁸⁾인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의 경우 중위소득 80%~100% 이하인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현행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중위소득 63% 또는 72% 이하)⁹⁾보다 지원 대상의 범위가 넓고,

교육 정보화 지원의 경우 모든 시·도에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가족구성 형태(부자, 모자, 조손 등)와 관계없이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바, 사실상 현재도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에 대하여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교육비 지원 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을 포함하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교육비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타당한 입법 조치로 판단됨.

개정안에 대하여 교육부는 이미 한부모가족 학생을 별도 구분 없이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지원

8) 2021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고 있어, 현재 고교학비와 급식비는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비대상” 학교(특목고, 자사고 등)에 재학 중인 학생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음.

9) 여성가족부 고시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으로 하되,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족으로 규정함(참고자료 참조).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도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참고로, 급식에 관한 경비의 우선 지원 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조손가정을 포함하려는 취지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 법률안」¹⁰⁾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문 의 처
02)6788-5184

10)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2024.11.18., 의안번호 제2205642호

참고자료

2025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여성가족부고시)

1)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 복지급여 지원대상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이상 자녀	자녀 1인당 월 37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40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결정고시, 재학생 등 학습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결정고 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중(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지원)인 경 우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 수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 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2)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족
- 복지급여 지원대상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 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 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